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목차

0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소개 01

02.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안내 15

03.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방법 안내 21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요약 27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0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소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2019. 1

목 차

- I** 공공구매제도 개요 및 현황
- II** 시범구매제도 소개
- III**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IV** 구매기관 참여방법

I 공공구매제도 개요 및 현황

1. 공공구매제도 개요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3. 공공구매 현황

1 공공구매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

구매목표 비율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 (관표지원법 시행령)
- 성능인증제도 (EPC)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산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직접생산확인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계약이행능력심사
- 소기업 우선구매 등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 중소기업 우선조달
- 소기업 우선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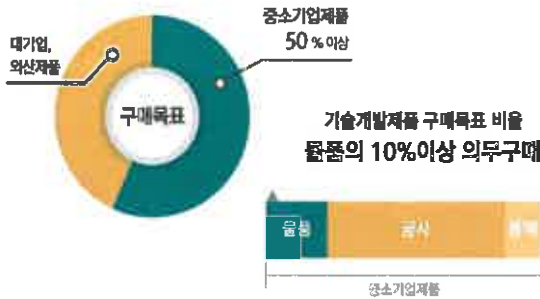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의 종류

성능인증	공공기관 개발선행제품
우수조달물품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
GS시험인증	녹색인증제품
신제품(NEP)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신기술(NET)	산업융합물품
우수조달공통상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	ICT융합물품인증제품
민관공동투자 성공제품	우수산업디자인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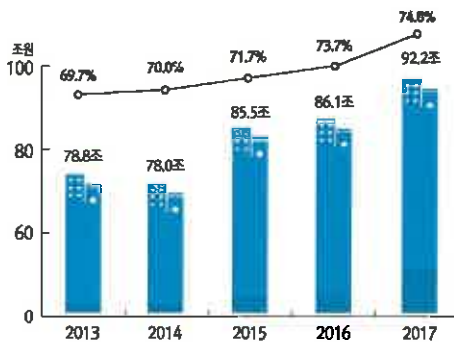


02

3 공공구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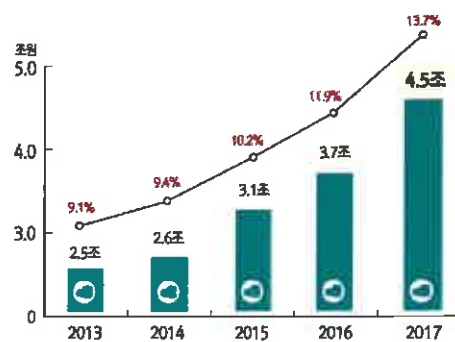
● '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92.2조원으로
구매비율 74.8%를 달성, '07년 63조원에서 대폭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기술개발제품은 4.5조원 구매 중소기업 물품구매
(33.0조원) 대비 13.7%로 의무 구매비율 10% 상회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시장은 '07년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성장사다리 역할 수행

03

II 시범구매제도 소개

1. 도입배경
2. 정책 방향
3. 시범구매제도 개요 및 특징
4. 시범구매제도 추진체계
5. 시범구매제도 절차 및 자격
6. 참여 공공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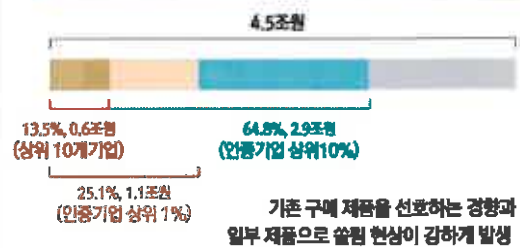
1 도입배경

다수 공공기관 구매목표 미달성

17년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미달실제



기존 구매제품 선호 솔림현상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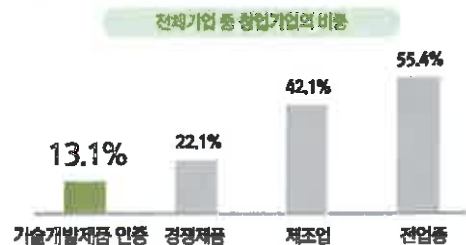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납품규모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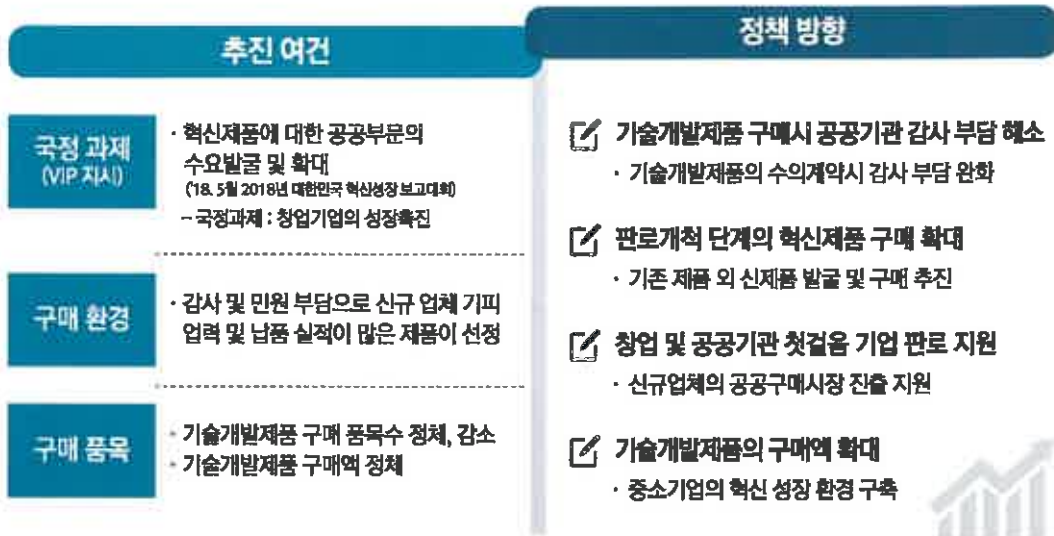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7,947억원

창업기업 비중
17.6%

창업·혁신기업 공공시장 진입 어려움



2 정책 방향



기존 기술개발제품 구매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업 및 혁신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식 도입 필요

3 시범구매제도 개요 및 특징

창업기업 및 판로 개척단계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시범구매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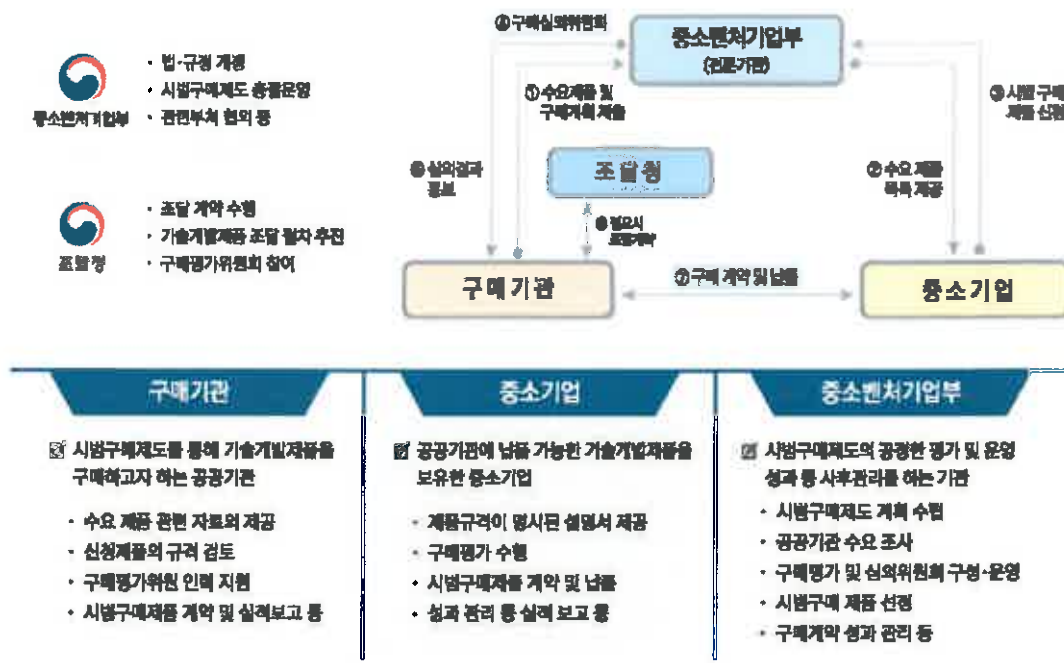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납품 실적이 없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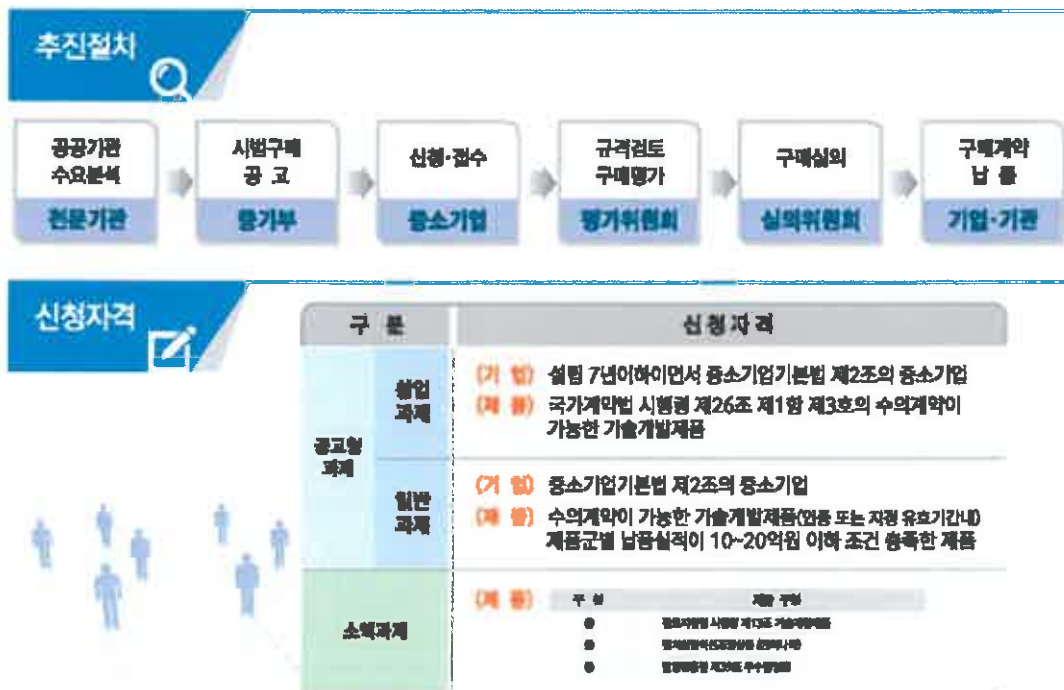
제도의 특징은?

- ▷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대행하여 감사 및 민원 부담 해소
- ▷ 창업기업 및 판로개척 단계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4 시범구매제도 추진체계



5 시범구매 절차 및 자격



6 참여 공공기관 현황



III 추진경과 및 계획

1. 그간의 추진경과
2. 시범구매 성공사례
3. 향후 추진계획
4. 시범구매 예상규모

1 그간의 추진경과



시범구매제도 상반기 추진 (18. 5월 ~ 9월)

업무 협약 체결 (6개 공공기관)

- '18. 4. 12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용기부, 조달청, 6개 공공기관이 업무 협약 체결
- 업무 제휴(MOU) 체결 시범구매 약정액 430억 규모

구분							
공공기관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합계	6개						

상반기 시범구매 공고 및 제품 선정

- '18. 5. 2 시범구매제도 상반기 지원계획 공고 총 189개 기술개발제품 신청
- 규격검토, 구매평가,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 제품 선정

구분	신청기관	지원예산	신청제품	합계
공공기관	6개	14억 9천만 원	16개	23개

1 그간의 추진경과



시범구매제도 하반기 추진 (18. 8월 ~ 12월)

참여 공공기관 확대 (6개 → 60개)

- 18. 8월 동반성장평가지표에 시범구매제도 추가 참여기관 26개 기관으로 확대
- 18. 12월 중기부 유관기관 참여 및 구매기관 상시 모집 홍보

구매기관	공공기관			중기부	유관기관	합계
	당기	상반기	기타			
기관 수	26	17	2	2	13	60

하반기 시범구매 공고 및 제품 선정

- 18. 8. 16 시범구매제도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및 선정

구분	신청기관	지원예산	신청제품	합계
공공기관	26	35억 6천만 원	34	85

- 18. 10. 5 시범구매제도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 (상시 참여 공공기관 상시 모집 (1차) 10개 제품 선정 / (2차) 8개 선정

2 시범구매 성공사례

**시범구매제도
성공사례**

(주) 수테크놀로지 (사업 - 북악재)

(제품) 변기 에어커튼
(특징) 물로 냄새를 응해하는 혁신 제품
 물결감 효과 약 2.5톤/일
 친환경 방법 탈취효율 97%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 후 최초 공공기관에 납품 성공
 매출액 (17) 90백만원 → (18) 200백만원

(주) 아도니스글로벌 (사업 - 영도동)

(제품) 용간소음 저감 마루
(특징) 바닥의 울림을 반사, 분산, 흡수
 용간소음 저감 가능 탁월
 보행감 우수 및 미끄럼 방지가능



시범구매제품으로 LH의 아파트 사용 현장에 계약 성공
 매출액 (17) 270백만원 → (18) 2,800백만원

미동체어 (사업 - 노재)

(제품) 자세변화 대응 조절 의자
(특징) 슬라임딩 장치 적용으로 편안 착석감
 자세 개선에도움
 척추 기립근 활성화에 따라 요추전만 유지



시범구매로 선정 후 공공기관 납품액이 크게 증가
 매출액 (17) 149백만원 → (18) 300백만원

(주) 동성인더스 (사업 - 노재)

(제품) 자가 통합 방재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장치
(특징) 화재정후 감지 3단계 방재시스템 가능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발전량 저하요인 보상 및 최도효율 향상



타사 경쟁으로 공공조달에 어려움을 겪던중 납품성공
 매출액 (17) 270백만원 → (18) 2,800백만원

3 향후 추진계획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 ▷ '19년도 시범구매제도 개선
*관리지침 개정 등
- ▷ 민간 연계 방안 마련
*간담회 등으로 계획 수립
- ▷ 수요제품 조사 및 공고
(19년 1월중)
-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기재부 협의 추진

- ▷ 시범구매제도 법제화
*편로지침법 개정
- ▷ 시범구매 신청제품 평가
(19년 4월 ~ 5월)
- ▷ 시범구매 제품 선정
(19년 5월)
*구매심의위원회 개최

- ▷ 시범구매 2차 공고 준비
(19년 6월)
*공공기관 간담회 등
- ▷ 시범구매 신청제품 평가
(19년 8월~9월)
- ▷ 시범구매 제품 선정
(19년 5월)
*구매심의위원회 개최

4 시범구매 예상규모

시범구매제도 예상구매 규모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전체 공공기관 참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창업·첫걸음기업 지원

시범구매 제품의 50%이상
신규업체 판로개척 지원

시범구매제도 확대 방안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법적근거 마련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시범구매 실적 공공기관 평가 반영 (예: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 배점 신설 등)
- 시범구매에 대한 감사자제 지정 요청

VI 구매기관 참여방법

1. 구매기관 제도참여
2. 참여방법 및 절차
3. 구매기관 신청방법

1 구매기관 제도참여

시범구매제도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유도



시범구매 지원기간 및 유의사항

-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제품으로 자격 유지
- 다만,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 인증(자정) 유효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도 함
- 시범구매 선정제품은 최초 수요 구매기관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구매계약 가능
- 구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업 소재지는 관할지역에 한하여 구매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체의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

15

2 참여방법 및 절차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으로 신청

- 구매기관으로 희망하는 지자체의 경우 구매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 시범구매제도의 구매기관으로 참여
-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은 상시모집

수요분석, 규격검토, 구매평가 등에 참여

- 구매기관으로 기술개발제품 수요목록 조사 및 제출
- 신청제품에 대한 수요규격 적합성, 구매기관 필요성 등의 규격검토 실시
- 제품에 대한 혁신성, 성장성 등을 수요부서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

공공조달시장 외 민간제품에 대한 지원체계 구성

- 민간의 혁신 제품이 공공구매시장에 없는 경우 시범구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6

3 구매기관 신청방법

구매기관 신청방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 령
- 2018. 1. 25 까지 (1월말 광고 예정)**
구매기관 신청서, 수요물품조사서 제출
기 간 *시범구매 참여 희망 공공기관 상시 모집
- 전문기관으로 구매기관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방 법

제출장소

이메일 제출

제출처

sho@smp.go.kr

구매기관 신청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 공공기관 구매기관 신청서

구분	구분명	구분명
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 정보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신청 번호	신청 번호	신청 번호
	신청 번호	신청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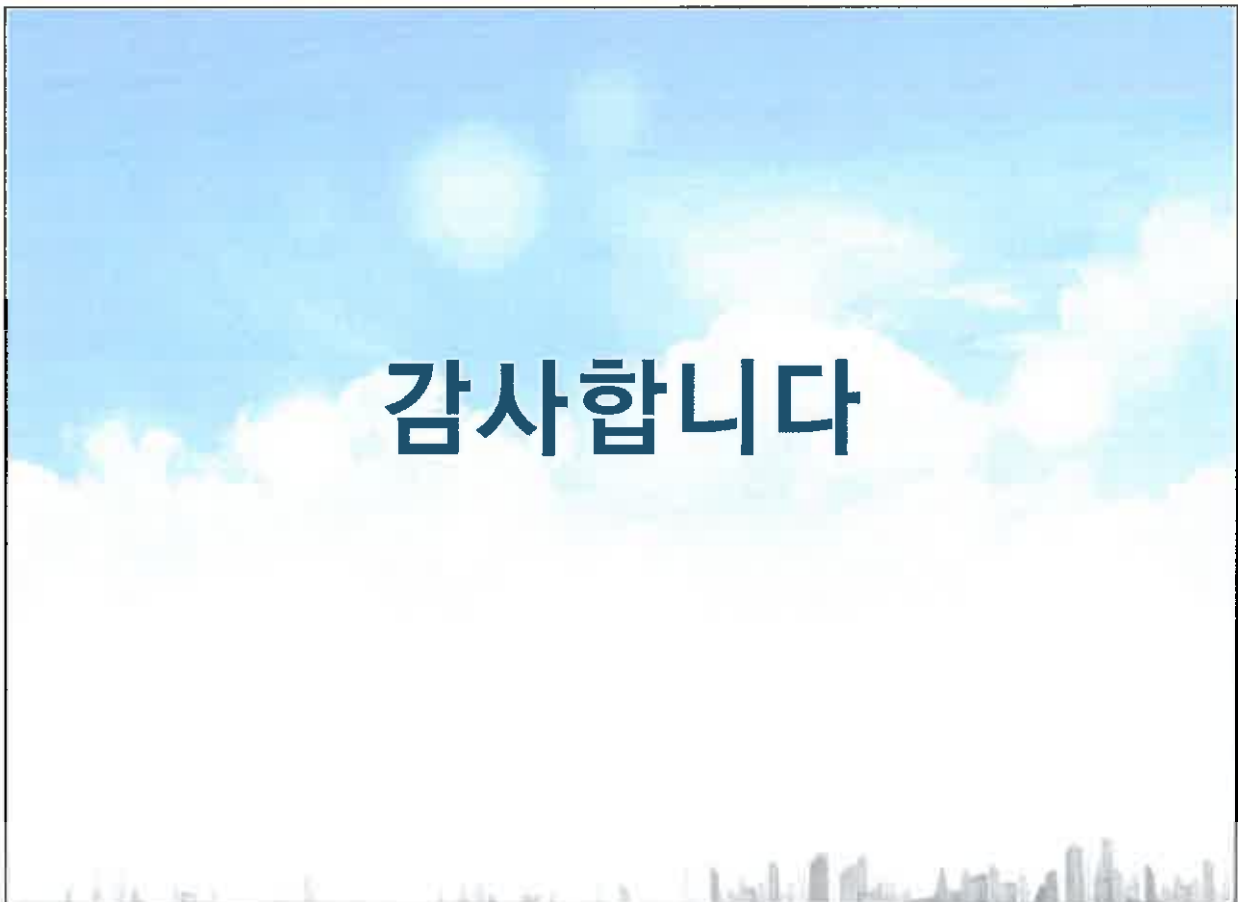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을, 더 많이 늘게 도와 전국 구매기관으로 등기(2019) 신청합니다.

기 간 : 2018. 1. 25 까지

제 출 처 : sho@smp.go.kr

중소벤처기업부령관 권혁

☎ 문의처 : 한국산학연합회 판로지원팀 : 042-720-3331~5 / <http://www.smp.go.kr> (시범구매)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02.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안내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안내

□ 평가지표

- 국정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정전략 2-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국정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평가지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평가산식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대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과 녹색제품 구매액의 비율로 산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times 100$

- 신기술제품 시범구매제품 구매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시범구매 선정 제품을 통해 구매한 실적으로 평가

- 시범구매 비율이 신기술제품 구매액의 10% 미만인 경우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되어 평가 시행

* 지표 산정시 물품구매액만 인정

(37개 대기업집단 구매액은 제외되며, 기술개발제품은 중견기업까지 구매 제외)

□ 평가서식

구분	중소기업 물품구매금액	기술개발제품①		녹색제품②		신기술제품①+②		시범구매제품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합계(㉓+㉔)									
○○ 시도 ㉓									
시군구 합계 ㉔									
○○ 시									
○○ 군									
○○ 구									

□ 합동평가 지표내용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5.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국정 과제	2-5-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평가 지표	㉔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합동 평가 지표	○ 산식 - 신기술제품 구매율 (기술개발제품 구매액+녹색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100		
	○ 산식설명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중 품목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16종)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기술개발제품명	개념	근거법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촉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조달물품	조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입선하여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권호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마에 준하는 대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동10개 법률
	우수조달 공표상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써 기업을 증폭하는 것을 지칭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하도록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험령, 제18조의2
	녹색인증제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자금(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성과공유 확산제에 따른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융합제품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제품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 기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제15조	
공공기관의 개발 신청품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된 제품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시무규칙」 제8조	
KT 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사항을 통해 확인 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 (GD : Good Design)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 녹색제품 구매액 :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녹색제품명	개념	근거법
환경마크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시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우수제품품 (GPA)마크	제품별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며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이 우수한 자원용제품 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2019년 목표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비율

시부			도부		
구분	목표	시범구매	구분	목표	시범구매
서울특별시	20.0%	2.0%	경기도	20.0%	2.0%
부산광역시	20.0%	2.0%	강원도	10.5%	1.1%
대구광역시	20.0%	2.0%	충청북도	15.0%	1.5%
대전광역시	18.5%	1.7%	충청남도	15.0%	1.5%
광주광역시	10.0%	1.0%	전라북도	10.0%	1.0%
대전광역시	19.0%	1.9%	전라남도	11.5%	1.2%
울산광역시	18.0%	1.8%	경상북도	17.0%	1.7%
세종특별자치시	11.0%	1.1%	경상남도	15.5%	1.5%
			제주특별자치도	15.0%	1.5%

- 품목구매만 인정(37개 대기업집단 구매 제외, 기술개발제품은 중견기업까지 구매 제외)
- 신기술제품 시범구매는 중소기업부 시범구매제품을 통해 구매
 - * 시범구매 비율이 신기술제품 구매액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
- 녹색제품 중 아스콘(미인증 아스콘 포함)은 원료부터 생산까지 환경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차년도 부터 지표에서 제외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 신기술제품 구매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	기술개발제품①		녹색제품②		신기술제품③+④		시범구매제품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구매금액	비율
합계(①+②)									
○○시도 ⑤									
시군구 합계 ⑥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snipp(광공구매종합정보망), 녹색구매정보시스템(환경부)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녹색제품 구매액
중빙 자료	
문의처	- 중소기업부 관료정책과 이진만(☎ : 042-481-4468, E-mail : lijn4834@korea.kr)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권무연(☎ : 044-201-6711, E-mail : wicbitte@korecn.kr)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03.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방법 안내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방법

□ 구매기관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청방법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구매기관 신청서와 지자체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 ①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서
② '19년 시범구매 수요물품 조사서
 - 제출처 및 문의처

담당기관 (부서)	전 화	신청서 제출처
한국산학연합회(판로지원부)	042-720-3331 ~ 5	sim@auri.go.kr

- 유의사항 : 구매기관은 시범구매 수요목록 자료 제공, 평가 및 심의 위원회 참여, 납품 가격 협의 및 계약 등을 참여

□ 향후계획

- '18.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수요조사
- '18.1월말 :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
- '18.2월 : 시범구매제품 신청·접수
- '18.3월 ~ 4월 : 시범구매제품 선정·평가 수행
- '18.5월 : 시범구매제품 선정 (1차)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방법

□ 구매기관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신청방법 : 시범구매제도의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구매기관 신청서와 지자체별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 ① 시범구매제도 구매기관 신청서
② '19년 시범구매 수요물품 조사서
 - 제출처 및 문의처

담당기관 (부서)	전 화	신청서 제출처
한국산학연합회(판로지원부)	042-720-3331 ~ 5	sim@auri.go.kr

- 유의사항 : 구매기관은 시범구매 수요목록 자료 제공, 평가 및 심의 위원회 참여, 납품 가격 협의 및 계약 등을 참여

□ 향후계획

- '18.1월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수요조사
- '18.1월말 : 시범구매제도 지원계획 공고
- '18.2월 : 시범구매제품 신청·접수
- '18.3월 ~ 4월 : 시범구매제품 선정·평가 수행
- '18.5월 : 시범구매제품 선정 (1차)

□ '19년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공공기관 수요물품 조사

발주장목	* 은 경수출품이며, 수요물품 조사 내용은 시범구매 공고시 적용됩니다. (19년 1월분)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번호는 판매처(공급처)로 기재하여 주세요.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번호가)
세부품명	세부품명은 세부품명번호 기재시 자동 입력됩니다.

기관명		담당자정보				제품정보						
연번	공공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	이메일*	수요제품명*	세부품명번호* (40자까지)	세부품명	물품규격	구매수량	추정가액(원)	제품설명
1	한국산학기술협회	관도지원팀	김선희	042-720-3372	sunny@auf.or.kr	배진반	3912110301	퍼시픽바진반	0600*2.30*2.100MM	1	2,000,000	원주 인가용 입고 처리는 인가관련 용어에 있는 인가
2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3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4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5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6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7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8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9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0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1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2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3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4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5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6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7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8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19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0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1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2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3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4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5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6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7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8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9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30								사우안염료 가역시 가용 염료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지자체 설명회



[참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 요약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관리지침 요약

1. 공통사항

□ 목 적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이하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용어의 정의

- 위원회 관련 용어

용 어	내 용
구매심의위원회	시범구매제도 구매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구매평가위원회	기술개발제품의 적합성, 가격의 적정성, 기업의 납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전문위원회	문제기업 또는 분쟁 발생 시 제재 범위 및 해결사항 등을 조정하는 위원회

- 추진체제 관련 용어

용 어	내 용
조달지원기관	조달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매평가위원회 및 구매심의위원회 참여, 조달을 요청하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가격검토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구매기관	공공구매 자료 제공, 구매 평가 및 구매심의위원회 참여, 납품 가격 협의 및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참여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조사기관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 현황 및 조달 계약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시범구매제품의 가격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관

○ 평가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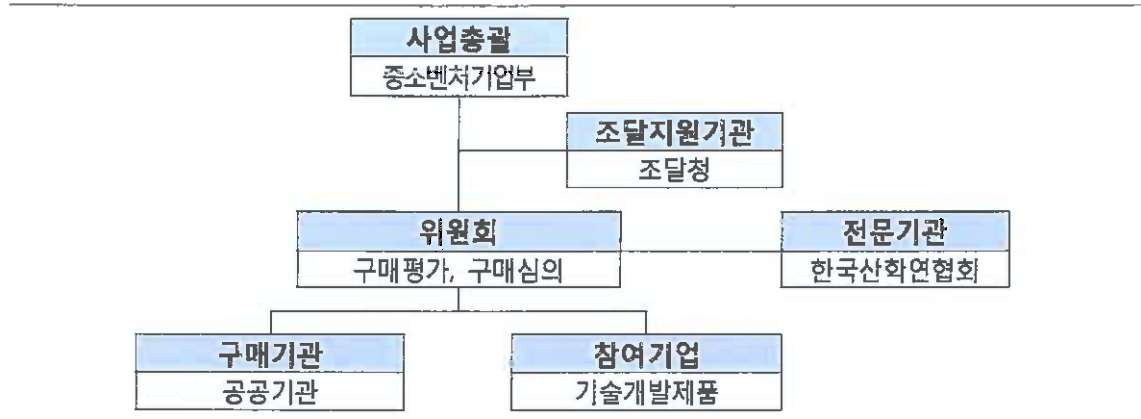
용어	내용
신청기업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하는 중소기업
신청제품	공공기관에 제품에 납품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5호·제6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
시범구매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평가·심의결과를 통해 최종 구매가 결정되어 구매기관 또는 조달지원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평가	신청·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성 및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평가
규격검토	신청기업의 제품설명서 및 제품규격서를 바탕으로 구매기관에서 제품 규격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평가
구매평가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제품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대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서면평가	제품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액과제의 제품설명서와 제품규격서 등을 토대로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실적관리	시범구매제도로 납품된 제품의 구매기관별 최종 구매 실적 및 참여기업 실적을 관리
성과관리	시범구매제도의 구매기관 및 참여기업의 성과를 조사·분석

○ 기타 관련 용어

용어	내용
시범구매정보망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내 구축되어 시범구매 참여신청 및 진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제품분야	「산업기술표준분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토목·건축, 사무용품으로 구분
세부품명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 따라 10자리로 표기한 번호
제품군	신청 자격 조건 및 기술개발제품의 납품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세부품명번호 앞 2자리에 따라 구분된 분류 기준
수의계약	시범구매제도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5호·제6호

□ 추진체계

○ 시범구매제도 추진체계



□ 구매기관 신청

구 분	신청자격
신청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방법	별지 서식에 의해 신규참여 구매기관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
시범구매제도 수행	① 공공구매 자료 제공, 구매 평가 및 구매심의위원회 참여, 납품 가격 협의 및 계약 등을 수행 ② 차년도 시범구매 목표금액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구매기관 계획서에 작성하여 당해 연도 시범구매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참여기업 신청

구 분	신청자격
신청자격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과제별 참여자격 조건에 부합
신청방법	신청 서식에 의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를 작성하여 시범구매정보망을 통해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를 제출
신청 제외 사항	① 신청제품이 접수 마감일 현재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어 자격이 유지되는 시범구매 지원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② 소액과제에 신청하여 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의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시범구매에 신청 불가 ③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④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시범구매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경우

□ 지원과제 및 지원기간

○ 지원과제

구 분	신청자격
공고형 시범구매	정기적인 공고를 통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고, 구매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는 창업과제와 일반과제
소액 시범구매	수시 접수로 신청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모집하고 서면평가 및 심의를 거쳐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하는 소액과제

* 구매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인 경우,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해당 구매기관의 관할지역인 경우에 한해 신청 및 구매가 가능

○ 지원기간 및 구매대상

- 최종 선정된 제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자격이 유지되어 구매기관이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 * 다만, 시범구매 지원기간 중 제품의 인증 또는 지정한 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날까지를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함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시범구매제품은 최초 선정 구매기관 외 다른 구매기관에서도 수요 발생여부에 따라 구매 계약 가능
- * 시범구매 참여 이전부터 수요처가 지정된 사업 성공제품의 경우 해당 수요처만 구매 계약 가능

2. 시범구매 지원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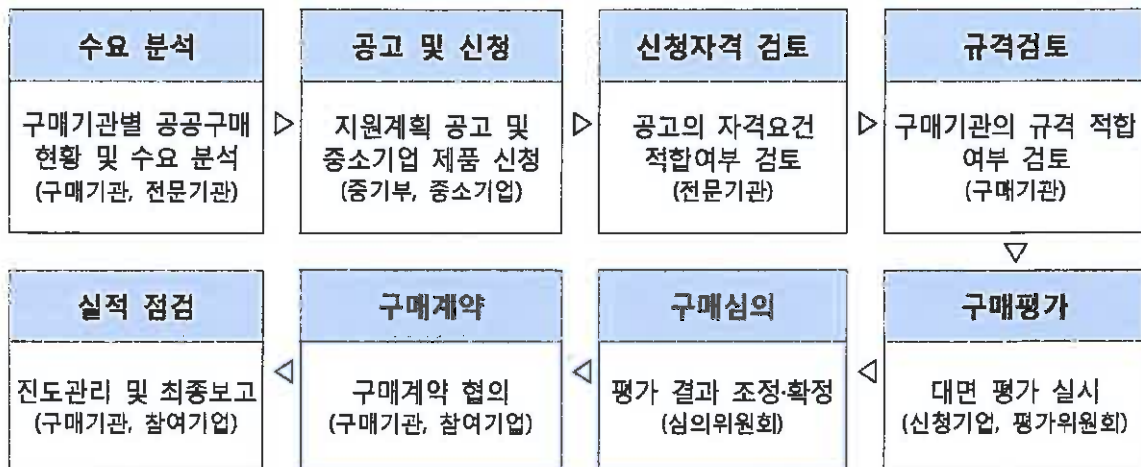
□ 공고형 시범구매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구 분	신청자격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재 품)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 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ADD8E6;">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ADD8E6;">납품실적</th> </tr> </thead> <tbody> <tr> <td>제품군A</td> <td>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이하</td> </tr> <tr> <td>제품군B</td> <td>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이하</td> </tr> <tr> <td>제품군C</td> <td>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이하</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제품군 : [참고2]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고자료</p>	구 분	납품실적	제품군A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이하	제품군B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이하	제품군C
구 분	납품실적							
제품군A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이하							
제품군B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이하							
제품군C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이하							

○ 추진절차



○ 제품평가

- **(규격검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에 대해 구매기관에 서면으로 규격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등 구매기관에 자료 제공 가능
- **(구매평가위원회)** 제품분야, 세부품명번호 등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신청기업은 제품의 품질, 납품능력,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설명하여야 함
- 서면 규격검토 결과 및 참여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내용과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하고, 제품 가격의 적정성 등 구매평가표에 따라 면밀한 검토 진행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창업과제	납품실적 (15)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혁 신 성 (25)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5)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25)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 쟁 성 (10)	시장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가 점 (최대5점)	고용우수(3점), 수출우수(2점)		
일반과제	납품실적 (20)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기업여건 (10)	재무건전성	R&D투자비율	기술개발전담조직
	혁 신 성 (25)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0)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15)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 쟁 성 (10)	시장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가 점 (최대5점)	창업기업(2점), 고용우수(2점), 수출우수(1점)		

* 구매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집계하고, 구매심의위원회에 추천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순위 배정 (70점 이상 추천 / 70점 미만 추천제외)

** 다만 평가지표 중 특정지표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종합평점에 관계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구매심의위원회)** 구매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구매평가 종합평점, 구매기관별 수요,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매심의위에 의결 요청 가능

- **(평가결과 통보)** 구매심의위원회 결과를 구매기관에 통보하고, 구매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신청기업에 통보

○ 구매계약

- **(구매 계약)** 구매기관은 구매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제품의 수의계약을 위하여 참여기업과 계약 협의 진행 가능 (납품단가, 기한 등)

- **(계약중지)** 계약과정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 중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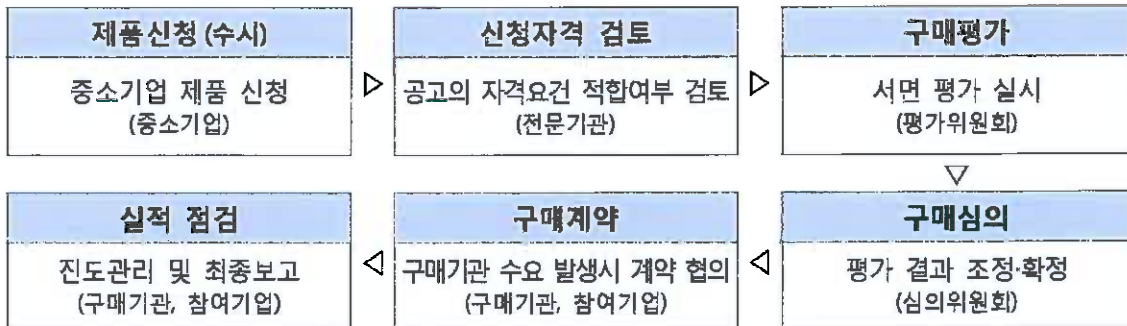
가)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한 경우
나) 납품단가 및 제품 규격이 구매기관에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시범구매제도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추천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마)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경영악화로 납품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시장 환경 및 조직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소액 시범구매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구분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	
구 분	제품 구분	
①	관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 추진절차



○ 제품평가

- (구매평가위원회) 제품분야, 세부품명번호 등에 따라 구매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참여신청서, 제품설명서, 제품규격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진행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소액과제	납품실적 (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혁신성 (2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장성 (20)	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안정성 (10)	제품 생산능력	사후 품질관리
	경쟁성 (10)	시장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구매가능성 (20)	공공기관 구매 가능 여부	
	신뢰성 (10)	품질·성능 우수성	
	가 점 (최대5점)	고용우수(3점), 수출우수(2점), 소상공인(2점)	

- * 구매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집계하고, 구매심의위원회에 추천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순위 배정 (80점 이상 추천 / 80점 미만 추천제외)
- ** 다만 평가지표 중 특정지표가 일정 점수 이하일 경우 종합평점에 관계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구매심의위원회)** 구매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 구매평가 종합평점, 구매기관별 수요,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구매심의위에 의결 요청 가능
- **(평가결과 통보)** 선정된 시범구매제품에 대해 시범구매 지원기간 내 구매기관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 구매계약
- **(구매 계약)** 구매기관은 소액과제로 선정된 시범구매제품에 대해 2천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진행 가능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2)

3. 보고 사항

- 진도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품의 구매 계약 실적을 구매기관 및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기관 및 참여기업은 전문기관에 구매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
- 구매기관은 시범구매제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구매제품 구매계약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최종 납품완료 건 / 구매계약 체결 건 / 규격 협의 완료건의 실적 요청
- 구매실적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시범구매제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 1 수의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유형

No.	제품명	개 념	근거법	비 고	
1	성능인증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공고형 시범구매	
2	우수조달물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지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3	GS 시험인증	정부가 SW의 품질을 보장하여 SW업체의 판로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4	신제품(NEP)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5	신기술(NET)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등 3개 법률		
6	우수조달공동상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물품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하도록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소액 시범구매
7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성공제품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R&D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8	민관공동 투자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협력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9	공공기관의 개발선택품	국산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기 위해 지정된 제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10	성과공유과제 성공품	기업 간의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하는 계약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11	녹색인증제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소액 시범구매	
12	중소기업용·복합기술 개발사업 성공제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13	산업융합품목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성과로 만들어진 산업융합품목을 선정하여 산업융합 활성화에 기여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및 제24조		
1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기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인증을 Fast-Track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		
15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정보통신 융합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16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상품의 외관·기능·재료·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대해 지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17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조달청이 '우수 벤처·창업기업 상품'으로 지정하여 벤처나라에 지정된 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18	우수발명품	특허청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	발명진흥법 제39조		

참고2 | 납품실적 관련 제품군 분류 기준

구분	분류	물품분류명	구분	분류	물품분류명	
제품군 A	10	산·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제품군 A	82	편집디자인 그래픽 및 예술 서비스	
	12	화학제품		83	공공사업 및 공공부문 관련 서비스	
	14	종이원료 및 종이제품		84	금융 및 보험서비스	
	15	연료, 연료첨가제, 윤활유 및 방부식제		85	보건 서비스	
	20	광산기계 및 액세서리		86	교육 및 훈련 서비스	
	21	농·수·임·축산용 기계		90	여행, 음식, 숙박 및 오락 등 서비스	
	22	건축선설기계 및 보조용품		91	개인 및 가정 관련 서비스	
	23	산업용 제조가공기계 및 액세서리		92	국방 및 치안 관련 서비스	
	27	공구 및 범용기계		93	정치 및 행정서비스	
	31	제조부품		94	조직 및 동호회	
	42	의료용기기		제품군 B	11	광물, 식물 및 비식용 동식물 지원
	43	정보기술 방송 및 통신기			24	물품취급, 조정, 저장기계 등 소모품
	44	사무용기기 액세서리 및 용품	26		회전기기 및 경전기	
	46	공공안전 및 치안장비	32		전자부품 및 소모품	
	48	서비스업용 기계 장비 및 용품	40		배관 유체조절 시스템 장비 및 부품	
	50	식음료품 및 담배제품	41		실험실용, 측정, 관측 및 검사기기	
	53	의류, 가방 및 개인관리용품	45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54	시계, 보석 및 원석제품	47		위생장비 및 용품	
	55	출판물	4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등	
	60	악기, 장난감, 미술작품 등 교육용품	56		가구 및 관련제품	
	70	농어업, 임업 및 야생동물 관련 서비스	81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71	광업, 석유 및 가스서비스	제품군 C		13	수지, 고무, 탄성중합체
	72	건물 및 시설물 건설유지 보수 서비스			25	상용, 군용, 개인용 운송기구 및 부품
	73	공산품 제조 서비스			30	건자재
	76	산업위생 관련 서비스			39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등 보조용품
	77	환경 관련 서비스			51	의약품
	78	운송과 보관 및 우편관련 서비스		52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80	경영관련 서비스				

* 분류 번호 :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앞 2자리로 구분

참고3 신규참여 구매기관 신청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신규참여 구매기관 신청서				
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장
	홈페이지			
	기관형태	(지자체)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input type="checkbox"/> 광역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시장형 <input type="checkbox"/>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기초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준시장형 <input type="checkbox"/>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명			E-mail
	연락처			휴대폰
소재지	주소	우()		
당해 연도 시범구매 금액		(목표금액 기재) 원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관리지침」에 따라 본 제도에 신규 구매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20 .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기관명 : 대표 :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p>				